

在外韓人の 分布와 現況

朴 商 台

I. 序 言

II. 移住의 歷史的 背景

III. 人口 및 分布

IV. 少數民族政策

V. 社會的 地位와 民族的 正體性

VI. 同化와 統合

I. 序 言

“1986年 6月末 현재 共產國을 除外한 韓國僑民 체류자數를 합친 在外國 民數가 마침내 二百萬名을 突破했다”고 東亞日報은 1986年 9月 1日 字제 1면에 大書特筆로 報道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101만 6천에서 200萬 8천으로 약 2배가 증가한 숫자이며 共產國(中共, 소련)의 230만과 더불어 430만의 韓人이 外國에 거주하고 있어 南韓人口의 10%나 되며 남북한인구(1986年 현재 推算되는) 6,300萬과 합하면 전세계에 거주하는 韓人의 數는 1986年 현재 6,750萬으로 推算된다(〈表-1〉 參照).

最近世 百年간 韓人의 海外移住는 重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위치한 韓半島에 미친 歷史的 事件의 結果이며 동시에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同胞들은 그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政治, 外交, 經濟, 社會, 文化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在外韓人에 대

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뜻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韓人의 外國移住에 대한 歷史的 배경을 살피고, 다음 현재 在外韓人의 人口數와 地域的 分布 그리고 韓人들이 居住하는 主要國家에서의 少數民族政策, 韓人의 社會的 地位등에 대해 考察하고 마지막으로 各國에서 韓人의 同化와 正體性維持問題를 장래 展望에 대신해서 言及해 보고자 한다.

〈表-1〉 在外韓人의 地域別 人口數*

1986年 6月末 現在

(單位: 千名)

地 域	人 口 數
아시아洲	2,560
中國大陸	1,836**
日 本	697
기 타	27
소 련	417***
北 美	1,082
美 國	1,024
카나다	57
中南美	73
브라질	29
알제틴	25
歐 洲	37
中東 및 아프리카	93
計	4,262

資料 * 東亞日報 第 19,975 號(1986.9.1) 第 1 面

** 1982 年 中國人口調查에 의한 人口數 1,764 千名에 年平均增加率 1%를 적용하여 推計함.

*** 1979 年 蘇聯人口調查 결과 389 千名에 年平均 增加率 1%를 적용하여 推計함.

II. 移住의 歷史的 背景

近代以前까지 國際移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건은 所屬國家 즉 出發國의 移民政策이었다. 各國이 국민들에게 外國으로 移民할 것을 許容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네개의 나라—中國, 美國, 日本, 소련—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비로소 國民의 海外移住를 許容하기 시작했다. 中國 淸나라 政府는 法令으로 1718년부터 1860년까지 海外移住를 禁止했다. 日本도 1885년 이후에야 해외이민을 許容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경우도 帝政러시아시절까지는 海外移住를 許容하지 않고 있었으며 韓國도 越境을 禁止했다.¹⁾

現代에 와서 國際移動은 海外移民에 대한 出發國의 政策보다는 移民을 받아들이는 到着國의 移民政策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날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移入人口의 數나 資格 및 入國後의 活動에 制限을 가하고 있다.

19세기 세계의 주요 移入國에서는 移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가에서는 廣大한 土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헐값으로 내 주었다. *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더 나아가 移住費用까지 부담하거나 資金을 대여하고 定着金을 支拂하면서 移民을 誘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第一次世界大戰後 특히 1930年代 世界經濟恐慌이후 失業者數가 鉅額 없이 증가하자 各國 특히 資本主義國家들의 移民政策은 급선회하여 移入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가마다 다투어 이민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法令을 制定하여 自國內의 勞動者들을 보호하기 시

1) U.N., 1973, p. 240.

* 이것은 美國에서 1862년에 제정된 Homestead Act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작했다. 단순히 이민의 數단을 제한하기도 하고, 자격이 있는 일정數의 이민단을 받아 들이는 법령을 제정했다. 예로써 移民稅(head tax), 移民割當制(quota)를 들 수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된 법률은 직업별로 이민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 中國

韓國은 러시아가 沿海州를 占領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中國과 國境을 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歷史上 언제부터 韓人이 中國으로 移住했는가의 問題는 우리 民族의 形成과 歷史的 發展과 관련되므로 이 問題는 간단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論及을 회피하고자 한다. 元末 明初 朝鮮王朝가 들어서고 15세기 전반기(世宗年間)에 약간의 國境변동이 있었으나 그후 오늘날까지 5百여년간 韓中國境의 큰 變動은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中國과 韓國 모두 19세기 후반까지 自國民의 外國移住를 許容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在中 韓人들이 自身들의 背景에 關해 陳述한 것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韓人들이 中國으로 移住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明清交替期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²⁾ 이는 현재의 國境線에 面한 지역 특히 間島地方에 韓人들이 부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며 人口도 많지 않았다. 큰 규모의 移住는 19세기 중엽이래 이루어졌으며 특히 1869년 韓半島 北部지역에 大凶年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기왕에 개척해 왔던 間道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移住를 흔히 제 1차 大移住라 한다.

그러나 韓人들이 間島地方뿐만 아니라 滿州全域과 中國大陸으로의 移住地域이 확대되고 大規模로 移住하게 된 것은 日帝의 韓半島 침탈에서 비롯되었다. 1910년 韓日合邦이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 및 기타 정치적 이유로 中國으로 건너갔다. 이를 제 2차 이주라고 한다. 그후 日帝의 土地調查事業으로 韓半島의 土地가 强占당하면서 零細民들은 경제적 기반을

2) 金光憲, 1984, pp. 37~40.

일고 滿州로 民族大移動을 방불케하는 移住가 성했다. 日帝는 1931年 만주사변을 일으켜 滿州侵略을 위해 日人과 韓人을 計劃的으로 移住시킨다. 이 시기의 대이동을 제3이동이라고 한다. 北間島地域에서 4~5대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在中 韓人은 이 시기에 移住한 사람들이다.

2. 蘇 聯

소련으로의 移民은 滿州移民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 이유는 현재 소련 영토가 된 沿海州가 1860年 北京條約으로 露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地方이 露領이 되기 전에도 韓人들이 살고 있었겠지만 露領이 된 후의 첫 이민은 1863年 13戶로 시작하여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1884年 韓露條約이 締結될 때까지 萬餘名의 移住民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韓國政府는 越境 流移民을 防止하려고 노력했으나 1869~70年의 大凶作으로 많은 사람들이 滿州와 露領으로 떠났으며 韓露條約前까지의 流入民은 러시아 국적을 받고 歸化하도록 했으나 그후의 移住民은 二年을 기간으로 하여 기간 만료후에는 韓國으로 歸國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歸國하지 않고 러시아에 귀화하였다. 러시아政府에서는 地理的으로 근접해 있기에 이주한 한국인 이민들에게 土地도 無償으로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며 土地의 개간과 道路의 개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으로 부터의 移民을 장려했다.³⁾

3. 日 本

韓國인이 日本에 거주한 것은 韓日合邦 이견부터이며 이들은 모두 유학생이나 망명객들이 대부분이었다. 合邦當時 幾百名에 不遇했던 韓國人은 合邦以後 正식으로 韓國勞動者를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1915年 이후 특히 1918년에 끝난 韓半島에서의 日人 土地調査事業에 의해 日人들은 많은 土

3) 徐大鼎, 1984, pp. 88~90.

地를 소유하게 되었고 土地를 잃은 韓國農民들이 일자리를 구하려 故國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反對로 日本은 세계 제 1 차대전을 계기로 産業이 급속히 발전하여 勞動力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日本政府는 저렴한 韓人의 勞動力을 利用하기 위해 法을 제정하여 韓人의 日本往來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하여 1915年 870名에 불과했던 渡日 韓人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16年 2,179명, 1917年에는 14,013명에 이르렀다. 農村出身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이들 日本移住 韓人들은 日本전역에 분산되었으나 특별한 기술을 갖지 못한 단순노동자들로서 大都會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지는 사업장의 임시막사나 貧民街가 주를 이루고 누추하고 지저분한 이들 한국인에게서 받은 印象은 후일 日本人이 韓國人에 대해 갖는 편견을 고정시키고 강화시키게 된 것이다. 1923年 關東大地震이 일어나자 유엔비에 의해 죄없는 수많은 韓人이 무참하게 학살당했으나 渡日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增加하고 있었다. 日本은 1931年 滿州事變을 계기로 독일 한인의 流入을 北쪽으로 향하게 하고 北韓地方에 工場을 建設하여 滿州와 中日本土로의 前進基地로 삼았다. 그러나 1937年 中日전쟁이 발발하고 이어 世界 第二次大戰으로 돌입하면서 日本政府는 國家總動員令을 발표하고 1931年 國民徵兵令을 발표했다. 즉 일본의 광산이나 군수시설, 군사시설 등에 필요한 勞働者를 강제로 징용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女子들까지 挺身隊란 이름으로 강제 징발하여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이 約 64만명으로 추정되며 死亡者와 行方不明者가 約 20萬名으로 推算되기도 한다. 二次大戰終戰當時 約200萬名으로 推算되는 韓人이 日本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다. 전쟁중 목적이 심하여 疎開된 한인의 수는 물론 정확히 알 수 없다.

戰後 이들은 거의 모두 歸國하기를 願했으나 韓國으로의 船便을 구하기가 容易하지 않았다. 더구나 1945年 11月 聯合軍司令部는 귀국하는 韓人들에게 소지품을 制限했다. 一人當 千円, 짐은 손과 머리에 들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그 이상은 지참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약간

의 재산이라도 日本에 있는 사람들은 귀국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6年 12月末까지 귀국행렬이 멈췄으며 約 60萬名이 귀국을 보류하고 日本에 남아있게 되어 이들 중 대부분은 在日韓國人一世가 되었다.⁴⁾

4. 美 國

美國은 1921年과 1924年 各國家別로 移民의 數를 割當해서 받아 들이는 쿼타制를 制定했다.⁵⁾ 그 후 1930年代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기존의 법령 적용을 강화하고 經濟的으로 自立할 수 있는 移民만을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世界 第二次大戰후 다시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됨에 따라 미국내 노동력중 부족하거나 희소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移民을 우선적으로 받아 들이는 政策을 立案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二次大戰前에는 유럽系의 이민을 특히 選好하고 다른 大陸 특히 아시아系 移民을 차별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국적보다는 기술이나 자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法制定을 서둘렀다. 이것은 물론 미국내의 국적차별이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좀더 실질적으로는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숙련노동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⁶⁾

1965年 아시아—太平洋 沿岸國에 대한 差別을 포함한 國籍別 쿼타制는 撤廢되고 移民을 七個의 範疇로 나누어 미국시민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 및 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1, 2, 4, 5범주를 선정하고 亡命者는 제 7범주에 속하도록 했다. 여기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제 3, 제 6 범주로서 제 3범주는 專門的, 技術的 직업에 종사하는 그방면의 탁월한 과학 및 예술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 6범주는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요구되는 숙련 및 비숙련노동자를 말한다.

4) 李光奎, 1984, pp. 239~242.

5) Edward P. Hutchison, 1949.

6) U.N., 1973, pp. 241~245.

1965年 제정된 移民法은 1968年 7月 1日부터 적용됨과 동시에 전체 쿼타는 그대로 남겨두어 매년 17萬名으로 하되 미국시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은 이 쿼타에서 제외된다. 당시까지 많은 쿼타를 차지하고 있던 西半球內의 이민수의 上限線을 12만명으로 하고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2萬명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이와 같은 移民法 制定이후 지난 20年間 韓國, 中國, 日本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 沿岸國의 移民入國者數는 크게 增加했다.

Ⅲ. 人口 및 分布

1. 中 國

1982년 현재 朝鮮族으로 분류된 人口數는 約 176萬 4千名으로 이는 中國大陸에 존재하는 54개의 主要 少數民族中 人口의 크기로 10번째이며, 海外韓人中 가장 많은 수를 占有하고 있다. 이들은 吉林省에 約 110萬名, 黑龍江省에 46萬餘名, 遼寧省에 約 18萬名이 있어 주로 東北三省에 散在해 있다. 나머지는 內蒙古自治區에 비교적 큰 숫자의 인구(約 5萬)가 거주하고 기타 北京, 上海등 대도시와 山東, 廣西地方의 主要도시에 적게는 百명에서 크게는 수 千명에 이르는 韓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韓인이 가장 많이 集中되어 있는 地域은 吉林省의 延邊 朝鮮族 自治州로서 중국 거주 한인 총수의 40%이상이나 되는 75만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1982년 7월 1일 中國에서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를 直接 인용할 수 없으므로 精確한 숫자가 아니다. 발표된 숫자에는 中國으로 귀화한 韓僑와 中國公民權을 갖지않고 外國居留民으로 있는 동포등이 제외되었으며 대략 2百萬으로 推算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第1表 參照). 또한 한국인으로 보고된 中國人도 있겠으나 中國人으로 보고된 朴氏, 金氏, 李氏등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⁷⁾

7) 金光億, 1984, pp. 40~42.

2. 蘇 聯

소련內에 거주하는 韓人의 70%以上은 Uzbek 共和國과 Kazakh 共和國에 있다. 1979年 소련 人口調査에 의하면, 소비에트聯邦內의 韓人總數는 38만 9천명으로 1959년의 31만 4천, 1970년의 35만 6천과 비교하면 59~79년의 20년간 約 24%, 70~79년의 9년간 約 10%가 증가한 것이다. 年平均增加率을 1%로 보면 86年 현재 約 41만 7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推算된다(〈表一〉 參照).

Uzbek 와 Kazakh 共和國外에도 Kirgizia, Tadjikistan, Turkmenia 등 공화국에 각 1萬여명 이상씩 거주하고 있으며 사할린, 하바로브스크, 캄차카 등지를 포함하는 러시아공화국에 10여만 이상이 널리 分布되어 살고 있다.⁸⁾

3. 日 本

1986年 현재 日本에는 69만 7천명의 韓人이 居住하고 있다고 한다(〈表一〉 參照). 在日韓國人이 居住하고 있는 地域은 北海道에서 福岡까지 전국에 分布되어 있으며 農村보다는 都市 특히 大都市에 거주하며 이들은 大阪, 東京, 神戶, 名古屋, 京都, 福岡, 廣島 등지에 集中되어 있다. 이中 大阪市에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도 生野區에만 約 4萬명이 密集해 살고 있고 특히 生野區 住民中에는 濟州島出身이 많다고 한다.⁹⁾ 다른 地域에서와 달리 在日韓國人의 數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在日韓國人과 日本人과의 結婚數는 과거 1950年代까지 30%內外에 불과하던 것이 1965年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42%가 되고 1975년에는 50%를 육박하고 1981년에는 58%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즉, 夫婦가 다 같이 韓國人인 경우는 1965年까지 전체 韓國인 결혼수의 2/3 이상이었

8) 徐大庸, 1984, pp. 101~102 및 p. 117.

9) 李光奎, 1984, pp. 245~246.

던 것이 1980年대에 들어와서 2/5 이하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過去 日本의 國籍法은 父系主義로써 日本人이 外國人과 결혼한 경우 그 子女의 國적은 父의 國籍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5年부터 國籍法이 改正되어 父母兩系主義로 되어 父母 어느 한쪽의 國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됨

〈表-2〉 配偶者別 在日韓人の 婚姻數, 1955~1980

年度	總數	夫妻韓人		韓人과 日人	
		數	%	數	%
1955	1,102	737	66.9	336	30.5
1960	3,524	2,315	65.7	1,172	33.3
1965	5,693	3,681	64.7	1,971	34.6
1970	6,892	3,879	56.3	2,922	42.4
1975	7,249	3,618	49.9	3,548	48.9
1980	7,255	3,061	42.2	4,109	56.6

資料: 佐藤勝己, “在日韓國人の 現狀과 展望” 「在外韓人の 社會와 文化」(서울: 國際文化協會, 1984), pp. 225~226.

에 따라 日本人을 父로 하고 韓人을 母系로 태어난 사람은 물론 日本人을 母로서 父系가 한국인인 사람도 日本 國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每年 증가하고 있는 日人과 韓人의 婚姻數는 그 子女들로 하여금 日本國적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게 된 것이다. 또한 개정된 國적법에 의해 20세 미만의 韓國人 國籍 소유 靑少年은 申請手續을 하는 것 만으로 日本國籍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4. 美 國

1986年 6月末 현재 外務部 發表에 의하면 美國에 居住하는 韓人의 數는 102萬 4千으로 中國大陸內에 거주하는 韓人의 推定數 184萬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숫자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增加할 전망이다.

1903~1905年間 하와이로 7천명가량으로 시작한 韓人系 移民은 1960

10) 佐藤勝己, 1984, pp. 224~228.

年代初까지는 주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오늘날 韓人은 전 美國에 分布되어 있다. 中國系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집중되어 있고, 日本系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韓國系는 이들 민족집단에 비해 分散되어 있다. 예컨대, 1980年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日本系의 81%, 필리핀系의 69%, 中國系의 53%가 美國西部地域에 몰려 살고 있는 반면 韓國系는 43%만이 西部地域에 居住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동양계가 별로 거주하지 않는 美國 南部地域에도 韓인들의 20%가 정착하고 있다.¹¹⁾ 이것은 이민의 역사가 中, 日에 비해 짧은 이유도 있겠으나 한국 移民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하므로 韓僑들은 美國 內에서 多様な 職業을 가지고 여러지역에서 活動하고 있다는데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Ⅳ. 少數民族政策

1. 中國

中國에는 一千萬平方킬로의 廣大한 地域에 漢族과 더불어 中國政府가 公式的으로 발표한 55個의 少數民族이 살고 있다.¹²⁾ 約十億餘의 人口를 가지고 있는 漢族에 비해 이들 少數民族은 전체 人口의 6%에 불과하지만 전체면적의 約 60%에 달하는 廣大한 地域에 分布되어 살고 있다. 이들 少數民族의 수는 많은 경우 千萬이 넘으며(壯族), 千名內外에 불과한 경우(廣西의 京族 800名, 新疆의 俄羅斯族 1,000名)도 있다. 전체 합하여 1980年 현재 6千萬이 넘는 漢族 以外的 人口中 千萬이 넘는 民族은 壯族이며 五百萬이 넘는 少數民族은 回族, 維吾爾族의 세 민족集團이다. 또한 55개 少數民族中 百萬이 넘는 民族數는 13개나 된다. 이 중 韓族(朝鮮族)

11) 俞義英, 1984, pp. 172~173.

12) Fei Hsiao Tung, 1981, pp. 113~116.

中國政府가 公式的으로 發表하는 少數民族의 數는 一定하지 않다. 때로는 54個, 혹은 55個로 發表한다.

〈表-3〉 中國內 百萬以上の 少數民族, 1980年

民族名	人口數(萬)	主要據住地區(省)
壯族	1,200	廣西, 雲南, 廣東
回族	640	寧夏, 甘肅, 河南, 河北, 青海, 山東, 雲南, 安徽, 新疆, 遼寧, 北京, 天津
維吾爾族	540	新疆
彝族	480	雲南, 四川, 貴州
苗族	390	貴州, 湖南, 雲南, 廣西, 四川, 廣東
藏族	340	西藏, 青海, 四川, 甘肅, 雲南
滿族	260	遼寧, 黑龍江, 吉林, 河北, 北京市, 內蒙古
蒙古族	260	內蒙古, 遼寧, 黑龍江, 吉林, 新疆, 甘肅, 青海, 河北, 河南
布依族	170	貴州
朝鮮族	160	吉林, 遼寧, 黑龍江
瑤族	120	廣西, 湖南, 雲南, 廣東, 貴州
侗族	110	貴州, 湖南, 廣西
白族	100	雲南

資料: Fei, Hsiao Tung, *Toward a People's Anthropology*(Beijing: New World Press, 1981), pp. 113~116.

新華字典(北京, 商務印書館, 1972), pp. 590~593.

은 彝, 苗, 藏, 滿, 蒙, 布依族에 이어 10 번째로서 1980 年の 人口數는 160 萬으로 發表왔다.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은 寬大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中國은 以夷制夷의 政策을 써왔기 때문이다. 漢族의 生存을 위협하는 民族이 있을 경우 스스로 대항함과 동시에 侵入하는 民族에게 그 주위 민족을 이용하여 對抗토록 하는 것이다. 中國共產黨의 경우 그들은 1927 年 大敗하여 敗走할 때 주로 少數民族地域으로 피신했으며 이후 對國府軍 전투와 抗日鬭爭에서 共產黨은 여러 少數民族의 도움이 絶對적으로 必要했다. 中共은 1949 年 大陸席捲後 少數民族의 重要性을 절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政策을 수립했다.

1950 年代 初半에 中共은 行政體制의 改編을 實施했다. 當時 54 개로 分類된 少數民族中 36 개의 소수민족 거주지에 99 개의 自治區, 自治州, 自

治縣을 設置했다. 대체로 이들은 少數民族集團이 大多數인 區, 州, 縣으로서 自治區는 省級行政單位로서 內蒙古, 西藏, 新疆위그르, 寧夏回族, 廣西壯族自治區 등 5개가 있고, 그 밑의 單位로서 延邊朝鮮族, 海南壯族, 臨河回族自治州 등 26개가 있고, 그보다 下位級 行政單位로서 長白朝鮮族自治縣과 같은 縣級自治單位는 65개 그리고 그보다 下位行政單位인 自治旗가 3개 있다. 물론 自治區 밑에는 여러개의 州가 있으며 自治州 밑에는 여러개의 自治縣이 있다. 예컨대, 延邊朝鮮族自治州는 吉林省소속으로 圖明市, 延吉市 등 2개 市와 延吉縣, 琿春縣, 和龍縣, 敦化縣, 安圖縣, 汪青縣 등 6개 縣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1954年 公表된 中共의 憲法에는 少數民族에 관한 8個의 項目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各 少數民族은 그 尊嚴性和 權利 및 自由가 保障되며 人民會議에 代表를 參加시키며, 政府·財政·警察組織에도 그들의 代表를 參與시킬 權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經濟計劃과 國防에 관한 부문에는 言及이 없었으며 모든 事業은 黨의 指導下에 승인된다고 했다. 黨과 政府가 우선적이라는 立場을 지키고 있었다.

中共은 文化的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보다 온건하고 더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中國語와 漢文化를 수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各 民族에 固有한 言語와 傳統文化를 보존하고 사용함을 인정했다. 의료봉사팀을 파견하고 식량보급에 주력하며 稅金면제 등의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漢族과 非漢族간의 경제발전의 차이는 심화되고 이에 따른 少數民族의 불만이 증대되었다. 1950년대末과 1960年代初 漢族과 少數民族의 관계 즉 少數民族集團과 中國政府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1959년의 티벳사건, 1961~62년간의 中蘇분쟁의 결과인 新疆地域사건, 內蒙古에서의 獨立運動등은 이와 같은 불만이 表出된 것이다.

漢族과 非漢族에 대한 동일한 政策을 實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주요 政

13) 金光億, 1984, pp. 55~63.

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人民公社制를 少數民族에게도 적용시킴으로써 經濟體制를 합치시켰다. 둘째, 人口增加를 억제하기 위해 婚姻法을 制定하고 少數民族에게도 적용시켰다. 셋째, 少數民族의 各급학교에서 公用語로서 中國語教育을 義務化했고 公式職位로 나가기 위해서는 中國語使用能力을 필수조건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文學, 藝術活動에 있어 各民族의 傳統的樣式을 保存하되 內容은 반드시 社會主義에 充實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同一한 政策을 적용함으로써 漢族의 優위와 漢族優비니즘(chauvinism)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다. 각 소수민족지역에 漢族人口를 대거 이주시키고 漢族行政要員이 投入했다. 따라서 地方經濟發展의 혜택은 少數民族 구성원들에게 보다는 漢族이나 中央政府로 돌아가게 되고 傳統的인 生計經濟의 기반을 변질시키고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年代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농촌경제가 회복하게 되고 民族葛藤現象도 점차 小康特態를 유지하게 되었다. 1970年 改訂된 中共憲法에는 少數民族關係條項이 1953年 헌법의 8個조항에서 1개 조항만 남게 되었다. 表面的으로 잘 융화되어 가는듯한 漢族과 非漢族간의 關係의 근저에는 中國人의 강력한 漢族優비니즘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특히 文化革命기간 동안 少數民族은 뚜렷한 差別待遇와 迫害를 받게 되었다. 經濟的 平等이나 物質的 惠澤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少數民族가운데서도 教育을 통해 民族幹部가 培養됐고 高級人力이 養成됐기에 政治的 發言權을 要求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根本的인 對少數民族政策이 강구되었다. 1978年에 制定된 新憲法에는 各民族의 固有文化를 發展시키며, 民族代表權을 保障하고, 自治條例를 스스로 制定할 權限을 부여하고, 少數民族幹部를 養成한다는 4個條項이 들어가 있다. 1982年 現代新憲法內의 少數民族에 관한 項目은 11개로 늘어났다. 自治地域의 首長을 해당 民族出身으로 한다는 것, 地方財政自治權의 認定, 經濟建設과 資源開發에 대한 自主的 管理의 認定, 治安維持를 위한 公安部隊의 許容등의 조항이 新設되었다. 이와 같은 憲法上的 項目增加와 더불어 1983年 5月에는 이들을 補強

하는 胡耀邦의 6個項目이 나왔다. 나아가 1984年 5月에는 第六屆 全人大會 第二次會議에서 少數民族區域 自治權에 대하여 前年 胡耀邦의 6個案을 補強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向上되는 法的 措置는 中國의 政治的 狀況을 反映해 줌과 동시에 政治的 可變性과 漢族中心社會인 中國에서의 少數民族 地位 상에는 限界가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한 예로써 人口政策에 대한 最近 中共學者의 論議를 살펴보자.¹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中國에는 總人口의 6%를 차지하고 있는 6千여만 명의 少數民族이 中國全國土의 60%에 散在하여 거주하고 있다. 中國은 원칙적으로 모든 國民에게 적용되는 人口政策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少數民族이라 해서 無限한 自由를 줄 수는 없고 더우기 漢族이 1949년 이후 급격한 人口增加에 의해 人口壓迫을 받았으므로 少數民族에게는 이와 같은 前轍을 되풀이 않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產兒制限을 普遍化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例外도 있다. 邊境地方의 廣大한 山地에 分布되어 있는 少數民族에 대해서는 漢族과 같이 一夫婦當 一子女를 強要해서는 안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融通성있게 다루기를 提案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몇몇 少數民族은 지난 數十年間 人口가 減少한 예도 있다. 예컨대 Oroqen, Hezhe, Russian, Kazakh, Jingpo, Tartan, Uzbek, Wa 등의 少數民族은 1950年이래 계속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소의 이유는 (中國人과의 婚姻 또는 他地方으로의 移轉등)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들에게는 產兒制限보다는 出產獎勵政策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숫자는 감소하지 않더라도 人口密度가 지나치게 적은 Tibet人에게도 出產을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政策은 少數民族과의 紐帶를 강화시키고 國境地帶의 發展을 圖謀하여 궁극적으로 中國의 近代化計劃推進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4) Liu, et. al., 1981, pp. 75~76.

2. 蘇 聯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中國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소련에는 100여개의 民族이 섞여 살고있다.¹⁵⁾ 따라서 소련의 少數民族政策을 一括한다는 것은 本論文의 範圍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韓人에 대한 것만을 몇가지 記述해 보고자 한다.

앞서 人口와 分布에서 본 바와 같이 帝政러시아에서 韓國移民에 대한 대우는 비교적 寬大한 편이었다. 韓日合邦 이후 많은 사람들이 沿海州를 위시한 各 地方으로 移住했다.

韓日合邦前의 러시아 總督은 당시 歐美에 맹배해 있던 黃禍(yellow peril)를 우려했으며 韓國으로 부터의 大量移民을 두려워하고 統制하는 政策을 시행했다. 表面的인 이유는 韓人들이 露語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러시아內의 他民族과 同化하려고도 하지 않고 自己들의 部落만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여 韓人은 러시아에 害를 끼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韓日合邦後 1911年 새로 부임한 총독은 韓人을 되도록 많이 歸化시키려고 努力했다. 이런 政策下에서 韓人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러시아혁명기간이 끝날 무렵 露領韓人의 수는 20여만이었다고 한다. 이들 韓人은 紅軍에도 있었으며 帝政軍에도 있었다. 帝政이 終焉을 고향에 따라 紅軍出身이 勝者가 되고 英雄이 되었다. 당시 韓人들은 歸化人과 非歸化人으로 區分되어 歸化人은 철저히 보호 받았으나 非歸化人은 時限附居住가 許容되고 二年기간內에 韓國으로 歸國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露領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급격한 政變에 처하여 서로 協同하고 歸化人, 非歸化人을 막론하고 全露韓族社會를 形成했다.

그후 沿海州에 集中해 있던 韓人들이 中央아시아로 移住하기 시작한 것은 1924年頃부터이며 1920年代 中央아시아로의 移住는 自意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0年代 日本軍國主義政府가 滿州를 占領하고 이어 中國

15) 高松茂, 1984, p. 137.

本土를 侵略하게 되자 沿海州에 있는 韓人들을 대거 中央아시아로 강제 移動시켰다. 現在 소련 學者들은 中央아시아로의 強制移動은 다만 벼농사와 果樹栽培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당시 韓人の 이주는 日本侵略에 대비해 소련 國境防備를 充實히 하기 위해 猶太人, 中國人, 韓國人 등을 모두 移住시키고 믿을 수 있는 러시아계 白人으로 交替하려는 것이 目的이었다. 이와 같은 강제이주는 非人道的인 것이었으나 이것이 韓人이나 黃色人種에 局限된 것은 아니었다. Stalin 政權下에서 世界제 2次大戰이 발발하자 Volga 江沿岸의 獨逸人 自治共和國이 해산되고 1943~44年간 獨逸軍에 協助했다는 여러 自治州도 해체되고 移住시켰다. 이렇게 強制移住당한 韓人の 數는 18萬이었다고 하며 2次大戰中 朝鮮軍에 入隊하여 싸웠다.

그후 在소련 韓人들은 祖國과 密接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소련에서는 中國에서 보다는 더 各共和國의 自治를 보장하고 있으나 韓人の 경우는 독립된 共和國을 形成하고 있지 않다.¹⁶⁾

3. 日 本

日本이나 소련, 美國과 달리 日本內에는 百萬을 넘는 日本人以外的 民族集團이 없다. 단지 70萬에 가까운 在日 韓人이 가장 큰 異民族集團으로 存在한다. 日本은 日本國土內에 他民族의 居住를 원칙적으로 許容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에 오래 居住하려면 日本에 歸化하거나 日本人과 結婚하여 日本國籍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다.

日本 學者에 의하면 日本內의 外國人(韓人)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즉 1982年 1월 1일부터 在日 韓國人에 대한 社會保障, 社會福祉面에서 國民年金의 '經過措置'를 제외하고는 日本人과 同一하게 됨으로써 制度的으로 差別이 全廢되었다고 한다. 단지 日本國民과 다른 制度上(法律上)의 제약은 '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과 '外國人登錄法'의 적용을 받으며 國家 및 地方自治體制의 選舉權, 被選舉權이 없다는 것이다. 그밖의

16) 徐大肅, 1984, pp. 88~96.

職業制限으로서 公證人, 船路案内人, 辨理士 등 23 항목의 外國人에 대한 禁止條項이 있다. 이들 조항은 모든 外國人에 適用되며 韓人에게만 適用되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한다.¹⁷⁾

그러나 在日韓國人中에는 自意로 日本에 간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 強制로 끌려가다시피 移住한 사람들이 많으며 더구나 이들의 後孫들은 이제 韓國社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日本人 아닌 日本國民이 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政府는 이들에게 다른 外國人と 마찬가지로 滿 14세가 되면 居住하는 區廳에 가서 指紋을 찍고 등록을 필한 후 그곳에서 발행하는 등록증을 함시 휴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찰 등록증제시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在日韓國人은 出入國管理令에 의해 6年이상의 刑을 받는 죄를 범하면 刑을 받은 후 祖國으로 追放당하도록 되어있다. 일가친척도 없고 한국어란 한마디도 몰라도 韓國이나 北韓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在日韓國人은 願하지 않아도 生計를 위해 日本國籍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다는 結論이 나온다.

4. 美 國

Melting Pot 라고 불리울만큼 多樣한 民族과 人種으로 構成된 美國은 소련처럼 共和國으로 民族이나 人種이 어느정도 區分되어 居住하고 있지 않다. 美國의 移民史는 民族差別과 逆境을 딛고 일어난 여러 民族의 수많은 受難으로 점철되어 있다. 初期 英國과 스칸디나비아 및 프랑스 계통의 移民을 主宗으로 시작한 美國社會는 初期에 노예로 팔려온 黑人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후 大量이주한 Irish 와 독일계이민들이 差別을 甘受해야 했으며 다음 伊太利와 南歐系移民, 그리고 二次大戰前後의 東歐系移民과 猶太系移民, 最近에는 南美와 아시아人등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17) 佐藤勝己, 1984, pp. 233~234.

18) 李光奎, 1984, pp. 250~251.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複雜한 美國의 少數民族政策은 移民法の의 制定과 改訂을 통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歷史的 背景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美國은 1965年 移民法을 改訂했다. 1965年의 移民法은 John F. Kennedy가 上院議員으로 在職할 당시 成案하여 1963年 그가 大統領 在任時 提案되어 被殺된 후 1965年 Johnson 大統領 在任時에 通過된 것이다.

이 法案의 要點은 1924年에 制定된 國籍別 쿼타제를 止揚한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대단치 않은 것 같은 이 法案의 修整案은 맥카시즘이 풍미하던 1940~50年代를 지나 民權運動이 成熟하고 多様な 人種的-一民族의 不滿이 高潮된 1960年代 미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과거의 人種民族差別이란 誤謬를 是正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法案은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압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신대륙에서 받아 들여야 된다는 미국 건국초기로 부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¹⁹⁾ 公正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또한 寬大함을 전제로 한 이와 같은 移民法制定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日本, 中國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연안국의 이민 入國者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英國의 經濟人口學者 Thomas는 당시 미국으로의 頭腦流出 現象(brain drain)을 지적하고 미국은 移出國에 비해 相對的으로 利益을 본다고 主張했다.²⁰⁾ 유럽 諸國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제 3범주나 제 6범주에 해당하는 전문적 기술적 人力과 熟練勞動力을 養成하기 위해 많은 資本을 投資한 후 自國을 위해 活用하지 못하고 美國으로 빼앗긴다는 것이다. 이 두뇌유출 현상은 간단히 결론짓기 어려운 것이다. 단지 일을 놓고 보면 경제학적 投資-產出(investment-output)모형에 의해 두뇌유출이 移出國에 주는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을 놓고 移民들이 民族的 正體性을 유지하고 계속 母國과 연계를 가질 때 이것은 반드시 어느 모형에 맞추어 移入國이나 移出國이 一方的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다

19) Edward M. Kennedy, 1966.

20) Brinley Thomas, 1966.

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V. 社會的 地位와 民族의 正體性

1. 中國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在中韓人들의 經濟的 基盤은 과수원과 벼 농사를 위주로 한 農業으로서 쌀이 귀한 北中國地方에서 쌀은 다른 農作物에 비해 값이 비싸고 벼재배에 능숙한 韓人들은 相對的으로 漢族에 비해 높은 收益을 올리고 있다.

韓人集團도 다른 少數民族과 마찬가지로 中國의 政治的 狀況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少數民族에 대한 政策이 韓人에게도 적용됐다. 그러나 모든 少數民族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똑같은 갈등을 겪은 것은 아니다. 韓人集團은 티벳이나 몽고처럼 數百數千年間 유지돼온 土着社會가 아니었으므로 세습적인 정치구조나 土着的인 社會경제구조의 변화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韓人이기에 제한되는 고급인력 수급에서의 차별대우나 연고지가 남한이라는 이유로 사상성을 의심받고 黨幹部나 軍官으로의 진출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으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醫師나 教育, 研究分野, 工業技術職등 一般專門職으로 進出하고 있다.

그렇다해도 漢族과의 葛藤이나 마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0年代末부터 山東省의 農民과 勞動者들이 대거 東北三省으로 移住하고, 人民公社制에 따라 韓人和 中國人이 同一生産小隊나 大隊에 편성됨에 따라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表面的으로는 벼농사기술과 작업스타일 및 기질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으나 기실 漢쇼비니즘과 韓우월감의 충돌이었다. 1960年代 후반의 文化革命으로 漢族과의 충돌이 심화되기도 했다. 過去模範大隊로 칭송받던 韓人大隊들은 四人幫으로 부터 利己의이며 資本主義根性의 典型이란 혹평을 받고 南朝鮮의 앞잡이라 해서 投獄되기도

했다.

鄧小平體制 이후 과거 迫害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復權되고 대우받고 있다. 韓人들중 共產化以前 社會, 經濟的으로 높은 地位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政府에 대해 批判的이지만 가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中國 政府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教育의 惠澤을 준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²¹⁾ 中國內의 韓人들은 美·日·소에서와는 달리 韓國幼稚園, 小學校, 中學校에서 韓國語로 교육을 받고 특히 延邊朝鮮自治州의 首都인 延吉에 있는 延邊大學은 韓人同胞를 위한 綜合大學으로서 1949년에 建立되어 韓國語, 中語, 英語, 數學, 物理, 化學등 專攻科가 있고 醫學, 農學, 藝術등 特殊分野를 전담하는 7個의 單科大學이 있다.²²⁾

‘朝鮮族의 民族意識은 아주 強하다’고 在中韓人들은 自身들을 評한다. 이와 같은 民族正體性은 中國 漢族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朝鮮族은 漢族에 비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經濟的으로 윤택하고, 勤勉하기 때문에 少數民族이지만 스스로 더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월감은 配偶者選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韓人과 中國人의 婚姻은 흔하지 않고 大都市에서 中國人男子와 韓人女子의 婚姻은 더러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²³⁾ 이것은 勿論 逆으로 中國人女子가 韓人男子와의 婚姻을 忌避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2. 蘇 聯

在蘇韓人中 거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中央아시아의 韓人들은 韓國의 米作文化를 전파시켰고, 근면과 단함으로 이 지역의 수많은 異民族 및 土着民族들과 共存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이지역에서 ‘富者’ 民族集團으로 불린다고 한다. 韓人들 중에는 農業英雄이 된 사람들도 많으며 우수한 품종의 쌀 뿐만아니라 단위면적당 綿生産量이 가장 높

21) 金光燾, 1984, pp. 45~54.

22) 玄雄, 1984, p. 77.

23) 金光燾, 1984, pp. 63~66.

은 韓인이 재배하는 模範農場이 허다하다.²⁴⁾ 소련의 한 人類學者는 中央아시아 韓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要約하고 있다. 첫째, 韓國人들은 自己傳統을 지키고 있으며 둘째, 소련文化와 言語를 배우고 소련 사회에 同化하려는 것과 셋째, 中央아시아 他民族의 文化를 吸收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在中央亞韓人들은 지난 40여년간 거의 母國과 단절된 채로 살아오면서도 전혀 새로운 生活環境에 적응해 왔으며 그들은 中央아시아 土着民族文化의 많은 요소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가져간 韓國文化는 여전히 그들의 日常生活 구석구석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사회의 生活原理로 작용하고 있다 한다. 集團의으로 居住地域을 形成하여 定着한 것이 韓國傳統文化의 要素들을 유지하고 民族統合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우리나라의 한 人類學者는 주장한다.

中央아시아의 韓人들은 在日僑胞와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日本人과 文化的 區分인 民族만 다르지 人種上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自身の 民族을 감추고 유럽인이나 中央아시아 土着人으로 행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체질상의 區分인 人種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러시아인이나 카자크인이 되고 싶어도 몽골리안 계통의 韓人으로 남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에는 百餘個以上の 少數民族이 거주하며 소련의 一貫된 少數民族政策에 따라 民族的인 차별이 없기 때문에 民族的 아이덴티티를 감추어야 할 必要性이 없다. 또한 中央아시아의 韓人들은 수많은 少數民族이 共存하는 地域에서 뿔뿔이 흩어져 다른 民族집단에 흡수되기에는 數的으로 너무 많았고, 단합하여 民族的 正體性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三等市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⁶⁾ 그러나 在蘇韓인이 모두 韓國語에 능통하고 韓國의 傳統文化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母國을 그리워하고 母國에 대한 鄉愁는 二世나 三世에게는 희박할 것이며, 2,3

24) 李文雄, 1983.

25) 徐大庸, 1984, p. 102에서 引用.

26) 李文雄, 1984, p. 126.

世는 물론 대부분의 一世들도 모두 共產主義者이며 러시아어를 母國語로 하는 韓國系소련인일 뿐이다. 특히 2차대전중 강제로 징용되어 간 在자하린 韓人들은 모두 소련으로 歸化했으며 단지 一世中 一部가 소련으로 歸化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²⁷⁾

3. 日 本

職業構造를 통해 在日韓人의 社會的 地位를 살펴보면 대체로 日本産業의 核心部門에 참여하지 못하고 小規模企業이나 日本人의 하청을 받아 시행하는 소규모 공업이 대부분이다. 日本人에게 종속된 이들 업체들은 經濟적으로 불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單純勞動, 建設, 古物商, 行商등이 1, 2, 3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事務員, 販賣業과 管理職등 위세가 높은 직업을 가진 韓人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직업의 상대적 순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한 韓國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무역과 관광업이 활기를 띠고 이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增加一路에 있다. 몇몇 在日韓人은 日本社會의 惡條件에도 不拘하고 事業에 크게 성공하고 있다. 롯데재벌의 경우 2,600명의 社員을 거느리고 數千億圓의 판매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在日韓國人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문제는 日本人이 갖는 差別과 偏見이다. 在日韓人들은 極少數를 제외하고 대부분 韓國人이란 身分을 감추고 韓人임을 은폐시키고자 하기에 가정내에서도 日語를 사용하고 父母들은 日本人과 똑같이 행동한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韓人二世, 三世들은 자기가 韓國人의 後世인지 모르고 자란다. 韓人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에서는 韓人學校나 朝總聯系學校에 入學하지만 이들은 전체 在日韓人學生의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大多數는 日本學校에 入學한다. 그들은 日本의 學習過程을 통해 日本人의 價値觀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韓人에 대한 偏見을 갖는다. 그러나 國民學校上級學年이 되어 自身이 韓國

27) 徐大肅, 1984, pp. 98~101 및 108~111.

人임을 알고 級友들도 알게 될때 그 충격은 대단히 큰 것이다. 中學校까지 義務教育을 마치고 高等學校에 진학할 때 부터 韓人은 差別된다. 특히 高等學校를 卒業하고 就職을 하려 할때 또는 多幸히 大學까지 卒業하고 취직할때 또 한번 좌절의 쓰라림을 경험한다. 日本人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서도 日本의 公務員이 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私企業에서도 韓人을 채용하기 꺼려한다. 그렇다고 自營業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貸與하려 해도 日本銀行은 日本人의 보증없이는 韓人에게 資金을 貸與해 주지 않는다.²⁸⁾

一部 日本學者들은 日本에서의 韓人差別은 制度的으로는 없으며 감정적으로도 없어져가고 있다고 主張하며, 差別待遇를 받고 있는 것은 오랜동안 培養되어 온 偏見에 의한 것임을 是認하지만 韓人에게도 責任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制度를 改善한다 해도 日本國民과 韓人의 의식변화가 없을 경우 그 제도는 意味가 없다는 것이다. 每日의 日常生活에서 韓인들이 日人보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 때 日本國民의 의식도 점차 변화하리라는 것이다.²⁹⁾ 社會經濟적으로 劣惡한 地位에 있는 韓人들은 暴力組織과 기타 마약, 賣春등에 종사함으로써 日本社會의 周邊人으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신문을 위시한 매스컴에서 獵奇的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의례 韓國人이 끼어있음을 지적하고 편견은 가중되고 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日本人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在日韓人의 행위가 韓人에 대한 편견에 더 큰 作用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간단히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犯罪가 社會의 產物이나, 단순히 個人의 責任이냐는 社會學에서 오랜동안 논의되는 과제이며 學派에 따라 社會나 人性에 대한 기본가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4. 美 國

美國으로의 移民은 소련이나 日本으로의 이민에 비해 역사가 그리 짧지

28) 李光奎, 1984, pp. 246~251.

29) 佐藤勝己, 1984, pp. 233~236.

않으나 1965年 이후 移民法改訂後의 移民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L. A. New York, Chicago 등 대도시에 형성되고 있는 소위 Korean town 들은 20세기 初 유럽 이민들이 형성했던 Italian town 이나 Jewish town 등과 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오늘날 韓人타운들은 韓人中心의 住居地域 이라기 보다는 少數民族 混合居住地域에 韓人商店이 密集해 있는 것을 말한다.³⁰⁾

1984年 韓人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南加州地域에서 692명의 主婦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男便들 중 38%는 美國人이 經營하는 職場에 나가고, 20%는 韓國人이 經營하는 직장에 다니며, 나머지 42%는 自營業에 從事하고 있다 한다. 이중 主宗을 이루고 있는 것이 縫製業, 酒類小賣業, 注油所, 洗濯業, 衣類店, 食料品商, 햄버거스텐드를 위시한 食堂業이다.³¹⁾

在美韓人들은 열심히 일하고 위험성있는 사업을 시도해서 경제적으로 他人種集團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미국내 사정에 밝지 못해 破産한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부분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所得을 올리고 있다.

美國 韓人커뮤니티는 韓國에서 出生하여 成長한 一世와 美國에서 出生한 二世 및 三世,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와 美國에서 成長했거나 유학와서 영주하는 1.5世의 세 그룹으로 區分된다. 이들의 共通點은 韓人이라는 人種的, 民族的 共通背景을 기초로 하는 抽象的 一體感과 所屬感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몇가지 次元에서 서로 각기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다. 常用言語次元에서 1세들은 韓國語를 상용어로 사용한다. 反面 2세, 3세들은 대부분 韓國語를 잘 하지 못하고 英語만을 使用한다. 1.5세들은 二重言語를 사용한다. 이에 따른 家族內의 問題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한글학교가 대부분 敎會附設로

30) 俞義瑛, 1984, p. 173.

31) 俞義瑛, 上揭書, p. 208.

運營되고 있다.

다음 自我意識 乃至 正體性面에서 在美韓人은 여러 範疇로 區分된다. 1981年 남가주에서 행한 意識構造 調査에 의하면 應答者의 60%가 自身이 韓國人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35%는 자랑스러울 것도 없지만 창피할 것도 없다고 하고, 한국인임을 창피스럽게 여기는 應答者의 數는 1%미만이였다. 應答者중 35%는 돈을 번후에 歸國하고 싶다고 했으며, 25%는 한국사회가 좀더 안정되고 통일이 되면 歸國하겠다고 하고, 17%는 은퇴한 다음에, 17%는 전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위에서 우리는 60%는 아직도 歸國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나머지 40%는 韓國人임을 의식하고 있지만 韓國系美國人으로서의 의식이 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그 對象者의 80%이상인 一世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價値觀面에서 在美韓人은 傳統的이고 保守的인 多數와 進步的인 少數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勿論 傳統性和 保守性的의 區分은 애매하지만 대부분 1世는 權威主義, 男性優越主義, 人脈主義의인 傾向이 강한데 비해 2世나 3世의 경우 平等主義, 民主主義, 合理主義의 性向에 기울고 있다.

위와 같이 一見 同質的인 韓人集團內的 多樣하고 異質的인 要素들을 어떻게 調和시켜 協力體制를 구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美國內 韓人社會의 運命이 左右될 것이다.

二世들의 社會關係의 테두리는 벌써 韓人社會를 벗어나고 있다. 이들은 政治, 文化 및 社會活動에서 다른 民族이나 人種과 잘 섞이고 있다. 二世나 三世들은 韓國人 以外的의 男女를 그들의 配偶者로 選擇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傾向은 점차로 增加一路에 있다. 在美日本人의 경우 20% 以上, 在美中國人의 경우 50% 以上이 他民族配偶者를 選擇하고 있음을 볼 때 韓人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³²⁾

32) 俞義瑛, 上揭書 pp. 181~188 및 p. 208.

Ⅵ. 同化와 統合

過去 歐美社會에서 가장 바람직한 移民像은 到着國의 文化를 재빨리 收容하고 그 나라 言語를 習得하여 그 社會에 統合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過去 自己나라의 文化的 背景을 떨쳐 버리고 母國語를 되도록 빨리 잊고 새생활에 適應해야 한다는 것이다. 移民들은 自己母國의 慣習, 言語, 宗教 및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념체계를 지닌채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기 위해서 수많은 問題를 겪게 된다. 따라서 移民을 받는 國家나 社會에서 얼마만큼의 文化的 多樣性을 容認하거나 勸獎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同化(assimilation)나 統合(integration)이 이루어지게 된다. 同化는 自身の 正體性(identity)을 버리고 相對方에 單純히 吸收 融化되는 것이다. 그러나 統合은 自己의 正體性을 가지고 相對方에게 影響을 주면서 새로운 社會를 建設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統合은 相互交換의인 過程을 거친다. 한편으로는 移民간 나라의 土着民族이나 國民과의 關係를 통해 移民自身들이 變化하게 되고 다른 한편 그 社會에 影響을 미쳐 그 社會의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날 여러나라에서는 社會적으로 전국민의 一致와 和合을 전지하면서 文化的 多樣性을 認定한다. 즉 이민의 경우 一定 社會生活 領域에서는 그나라 전체 국민과 一致된 생활양식을 共有하면서 다른 領域에서는 文化的 差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文化的 正體性을 維持하면서 그나라 社會에 積極 參與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統合의 成敗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移民을 收容하는 나라 政府의 態度, 둘째는 收容國 國民의 態度,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移民自身들의 姿勢이다. 19세기 北美에서 유럽系의 移民들에게 非移民과 거의 같은 經濟的, 社會的 機會를 부여했던 여러 혜택은 統合을 촉진시켰다. 19세기와 20세기 大量移民을 收容했던 南美 특히 브라질 國民은 人種的, 宗教的 偏見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었다. 그 결과

브라질에서의 移民集團은 그 社會에 統合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言語, 宗教, 外貌가 현격하게 다르고 뚜렷하고 특수한 慣行과 傳統이 있는 民族集團은 他社會에 統合되기 어렵다. 19세기초 美國에서의 Irish 커뮤니티나 東南亞에서의 中國인과 印度人民族集團을 그 代表的 예로 들 수 있다.³³⁾

韓國인이 美國이나 中國 또는 蘇聯과 같은 多民族國家에 移民가는 것과 日本 같은 單一民族國家로 가는데에는 큰 差異가 있다. 多民族國家인 美, 中, 蘇등에서는 民族의 特性을 認定해 주고 그들의 身分을 保障해 주려고 하지만 대체로 歸化를 獎勵하고 歸化인과 非歸化인을 區別한다. 그러나 日本같은 경우는 歸化를 장려하지도 않고 他民族의 特性을 理解해 주지도 않는다. 또한 移民과 移住國 國民의 人種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도 큰 차이가 있다. 韓國인이 日本이나 中國에서는 外貌上 큰 차이가 없으므로 同化되기 쉽다. 그러나 美國이나 소련에서 白人이나 黑人행세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美·蘇와 中·日에 거주하는 韓人들에 대한 政策은 區別되어야 한다.

우리가 本 論文에서 살펴본 主要 在外韓人集團은 모두 數百年이상 살고 있는 土着民族이 아니며 最近에 移住해 간 移民集團들이다. 그러므로 自意로 갔던 他意로 갔던 이들은 모두 離散家族의 範疇에 속할 수 있다. 특히 韓人集團은 주로 世界最強國에 居住하고 있다. 中國은 世界最多人口와 莫大한 自然資源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은 가장 넓은 國土를 가지고 共產黨의 指導者役을 하고 있다. 美國은 名實共히 自由世界の 軍事, 經濟大國이며 日本도 美國에 버금가는 經濟大國이다.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傳統과 文化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융통성 있고 一貫性있는 政策을 樹立하여 이들로 하여금 正體性을 지니고 統合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韓國과 在外韓人과의 關係는 韓國과 中, 日, 美, 蘇와의 政治·經濟的 關係에 重要な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對外關係에

33) United Nation, 1973, pp. 259~260.

있어 肯定的이고 發展的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들의 役割은 더 重要해 질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松茂, “소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在外韓人の 社會와 文化」(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pp. 137~170.
- 金光億, “중국의 한인사회와 문화,” 上揭書, pp. 35~76.
- 佐藤勝己, “재일한국인의 현상과 전망,” 上揭書, pp. 224~238.
- 徐大肅, “소련의 한국인,” 上揭書, pp. 85~118.
- 俞義英, “남가주 한인,” 上揭書, pp. 171~223.
- 李光奎, “재일 한국인,” 上揭書, pp. 239~262.
- 李文雄, “中央아시아 韓人社會에 있어서의 民族藝術活動에 관한 考察,” 「東亞研究」 第2輯(1983年 6月), pp. 163~187.
- 李文雄, “소련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 「在外韓人の 社會와 文化」(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pp. 119~136.
- 玄雄, “중공의 한인들,” 上揭書, pp. 77~84.
- 新華字典(北京, 商務印書館, 1972).
- Fei, Hsiao Tung, *Toward a People's Anthropology* (Beijing: New World Press, 1981).
- Hutchinson, Edward P., “Immigration Policy since World War I,”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62 (March 1949), pp. 15~21.
- Kennedy, Edward M., “The Immigration Act of 1965,” *The Annals (Ibid)*, Vol. 367 (September 1966), pp. 137~149.
- Liu, Zheng, Song Jian, et. al.,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Prospects* (Beijing: New World Press, 1981).
- Thomas, Brinley, “From the Other Side: A European View,”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367 (September 1966), pp. 63~72.
- United Nations,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ited Nations, 1973).